

참고 1

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

※ 수산부산물 : 수산물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남은 부위
(어류의 경우, 주로 머리·내장·껍질·뼈 등의 부위)

□ 특구 개요

- (목적) 폐기 처리되는 **참치 부산물**(껍질, 뼈 등으로 참치 한 마리 당 60% 차지)을 **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작하여**, 수산업계 **고부가가치 신산업** 창출
 ※ (아이슬란드 사례) 대구의 부산물을 90%까지 재활용하여 12\$(비료, 퇴비)였던 부산물 가치를 5,000\$(의약품·화장품 원료)까지 증대
- (위치/면적) 경남 통영시·창원시·고성군 등 / 1.84km²
- (사업자/지정기간) (주)동원F&B 등 15개 사업자 / '24.6.1~'28.12.31 (4년 7개월)

□ 규제특례 : 1건

관련법	특례 사항	규제부처
폐기물관리법 §13조 등	[현행] 어류 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 및 처리 기준은 부재하며,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만 규정 ⇒ [특례] 부패·변질 우려가 높은 어류 부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재활용 및 처리 세부기준 마련	환경부

□ 실증내용

①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	• 참치 생산기업·대학·부산물 가공기업이 협력하여, 참치 안구(DHA)·껍질(콜라겐)·뼈(칼슘) 및 자숙액(단백질) 등을 제품화 • 수산부산물 창업기업 발굴 → 사업화(시제품 개발·마케팅·판로개척) → 민간투자 매칭을 통해 수산업계에 어류 부산물 재활용 확산
-------------------	--

□ 기대효과

-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*하여 수산업계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전환 선도

* 해수부는 국내 어류 부산물 재활용률이 낮은 원인으로(25%, 연 평균 50만톤), 어류 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 기준 부재, 수산기업의 영세성 및 관심 저조를 꼽음